

##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 대비표

“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2호(국공채)”의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✓ 대상투자신탁: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2호(국공채)
- ✓ 변경 사유: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.7.1)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2009.7.6) 사항 반영  
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조, 금융투자업규정 제7-15조, 제7-16조의 변경)
- ✓ 변경 시행일: 2009년 11월 10일
- ✓ 변경 주요 내용
  - 1) 투자한도 추가: 채무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상을 운용하여야 하며, 국공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 투자
  - 2) 투자되는 국채증권 잔여만기 확대: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->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
  - 3) 투자제한 조항 신설: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
- ✓ 변경 대비표

### ■ 집합투자규약

변경전	변경후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 대상에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</li> <li>3. ~ 8.(생략)</li> </ol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 대상에 운용한다. <u>다만, 채무증권(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상을 운용하여야 하며, 국공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</u>,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</li> <li>3. ~ 8.(생략)</li> </ol>
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_____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9.(생략)</li> <li>10. (신설)</li> </ol>	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_____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9.(생략)</li> <li>10. <u>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</u> 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</li> </ol>

■ 투자설명서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② 채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	② 채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,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나. 투자제한	(신설)	<p>⑩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</p> <p>⑪ 채무증권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종 채무증권(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및 국공채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70% 이상 투자하지 않는 행위</p>

■ 간이투자설명서

항목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
1. 주요투자대상	채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	채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,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